

2021년도 제2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9. 2.(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2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09건(안전번호 제2021-115757호~11741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115757호~115781호(순번 1번~25번)는 방송사업자 등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115782호~115785호(순번 26~29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영상물(방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115786호~115796호(순번 30번~40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와 방송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115797호(순번 41번)는 제품 판매를 위하여 타인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사안으로, 명백하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보호원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구

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은 이미 삭제되어 해당 부분의 구제는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115798호~117410호(순번 42번~1654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50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801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1-11905호~1270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중 2021. 9. 2. 현재 접속 가능한 3개 사이트의 520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2021. 9. 2. 현재 접속이 되지 않는 2개 사이트의 281개의 URL 정보에 대해서는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2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2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60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654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오픈마켓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음.

(순번 1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쇼핑 포털인 '☆☆☆☆☆'에서 '★★★★★'를 219,300원에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세페이지에는 상품의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음.

(순번 2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오픈마켓인 '○

○○○○’에서 ‘●●●●●’를 289,400원에 해외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음.

본 건 기기의 자세한 작동원리 및 기능은 기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심의대상인 스트리밍 기기의 판매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함(가결 의견). 다만 순번 1번, 3번, 12번, 14번, 15번, 20번, 24번(10건)의 게시물은 2021. 9. 2.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자에 의해 판매 중단 또는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 게시자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를 판매하고 있음. 이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순번 1번, 3번, 12번, 14번, 15번, 20번, 24번의 경우 판매 중단 또는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가결 의견임. 단, 이미 판매 중단 또는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을 함이 타당함.
- A,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5번 중 이미 판매 중단·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6번~29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28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2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 ■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6번~2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29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0번~40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방송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등과 방송 '▲▲▲▲▲' 등을

각각 30포인트에서 14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1개 게시물임.

(순번 4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14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전체 분량인 1시간 9분 35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0번~4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방송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0번~40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1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이 특정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접 착용·촬영한 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 '▼▼▼▼▼'의 판매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1건). 2021. 8. 30. 기준 심의대상 게시물 중 민원인 사진 무단 이용 부분은 삭제되었음.

(순번 4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우리 심의 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 광고 사진 또는 제품 사용 관련 이미지 무단 이용 사안에서, 해당 사진 등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품판매 게시물 내 사진 이미지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바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제품 판매와 무관한 저작물을 제품 판매를 위하여 무단 도용한 경우, 명백하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보호원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던 바도 있음.

본 심의안건에 있어 원 이미지의 저작물성이 불명확한 점, 해당 사진들은 특정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점, 존재한다 하여도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해당 안전과 같은 경우 권리자인 민원인이 직접 민·형사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권법상의 보호 외에 특정 인물(일반인)이 포함된 사진으로 초상권 등의 보호필요성도 있으나 해당 사진이 이미 삭제되어 해당 부분의 구제는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 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4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사진의 경우 소재 선택, 구도 등에 비추어 저작물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민원인의 전신 초상이 포함된 사진의 경우, 초상권은 물론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사진의 무단 이용이 영향을 미치는 합법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진 자체의 합법 시장과 사진을 도용해서 상품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

음. 더불어 해당 게시물 중 민원인 이미지 부분이 현재는 삭제되었더라도 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정권고를 부결하기보다는 경고의 시정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우리 대법원은 햄 제품에 대한 광고용 카탈로그 사진의 무단 사용과 관련한 사안에서 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사진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투영된 사진으로 구분하면서 후자에 대하여서만 저작물성을 긍정한바 있음. 해당 관례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제품 사진인 첫 번째 사진에 대하여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민원인의 전신 초상이 포함된 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저작물성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음. 또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단정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불명확하다고 검토하였음. 종합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 A 위원: 첫 번째 사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함. 다만, 두 번째 사진과 관련하여서는 민원인의 포즈, 사진의 구도 및 기타 표현 등을 고려하면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민원인은 블로그에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구매 후기를 올리면서 착용 사진을 올린 것이고, 게시자는 이를 가품 판매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고 있음. 민원인의 얼굴이 드러난 부분을 비식별 처리한 것으로 보아 게시자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면 게시자의 위법행위를 더욱 엄중히 계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게시자는 제품 판매를 위하여 타인의 블로그 내 사진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명백하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가 보호원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해당 사진이 이미 삭제되어 해당 부분의 구제는 이루어진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1번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42번~165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슈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87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슈츠'를 1390포인트에 제공 중임. 총 16편 완결본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 USA Network에서 2019. 7. 17. ~ 2019. 9. 25. 공

개한 드라마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완다비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99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완다비전'을 875포인트에 제공 중임. 1화~9화 완결본을 제공하고 있음. 디즈니+에서 2021. 1. 15. ~ 2021. 3. 5. 공개한 방송임. 디즈니+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출판 '괴공유록'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93번은 웹하드에서 출판 '괴공유록'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1권~11권 완결본을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42번~165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42번~1654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2번~165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15797호(순번 41번)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15757호~115796호(순번 1번~40번), 115798호~117410호(순번 42번~165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8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1905호~12248호, 제2021-12530호~12705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하고, 제2021-12249호~12529호에 대해서는 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